# 2013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
# 검 토 보 고

**1. 제 출 자 : 성주군수**

**2. 지방채 발행 사유**

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소요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2013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사전 의결 받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□ 성주2 일반산업단지 지방채발행 : 400억원

○ 기발행(2012년) : 100억원

○ 2013년도 지방채발행 : 200억원

- 한도액 : 200억원

○ 추후발행(2014년도) : 100억원

**4. 참고사항**

**가.** 2013년 지방채발행동의안 : 붙임과 같음

**나.**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

**5. 검토의견**

○ 금번에 제출한 2013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

- 제18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적 근거 등은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써
-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도까지 총 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2012년 100억에 이어 2013년도에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를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